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

◇ 개정 이유

-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('21.8월)에 앞서 '20.2월 개정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

◇ 주요내용

-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(이하 ‘마이데이터’)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(안 제5조제6항, 제12항)
  - 소송·조사·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 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
-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(안 제13조의3, 안 제13조의4)
  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
  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·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

-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(안 제22조의3제1항)
  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
  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
  -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 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
-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(안 제22조의3제3항)
  -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
-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(안 제15조제2항, 안 제39조의2 제3항)
  -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
  -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(안 제26조의5)
 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,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·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

-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·검사 대상기관에 포함(안 제40조의10)
  -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·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
  
-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(안 제45조의2제1항제3호)
  -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,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